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23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나123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51689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신경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변론 종결 2024. 8. 30.

판결 선고 2024. 10.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516895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1,211,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1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채권자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납기일 2019. 7. 31.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31,211,7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5.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H, I, J가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경북 영주시 K답 4998m ²	174,300,000원
경북 영주시 L 전 205m ²	5,500,000원
경북 영주시 M 전 3616m ²	92,200,000원
경북 영주시 N 전 195m ²	5,200,000원
경북 영주시 O 대지 387m ²	124,700,000원
경북 영주시 O 건물 121.17m ²	

경북 영주시 K답 4998m ²	174,300,000원
① 적극재산 합계	401,900,000원
경북 영주시 K답 4998m ²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8. 1. 16. 접수번호 제700호로 경로된 근저당권	64,000,000원(채권최고액 76,800,000원)
② 소극재산 합계	64,000,000원
③ 합계 (= ① - ②)	337,900,000원

다. 피고, C, H, I, J는 2021. 6. 16.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21. 6. 17. 접수 제98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6,8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1. 8. 20.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6, 8호증, 을 제1, 4, 5~11,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을, 별지 목록 2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피고의 기여도, C의 특별수익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은 C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1968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년경까지 5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C을 비롯한 3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 외 다른 자녀들 또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다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단독승계 하는 것으로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았다거나 받기로 한 내역은 전혀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부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 노모의 남은 여생 동안의 거주 보장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망인은 2009. 3. 3.부터 2018. 10. 5.까지 C에게 합계 77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망인에게 2005. 1. 5.부터 2018. 12. 13.까지 595,062,378원(= ① 2005. 1. 5.부터 2008. 12. 17.까지 106,723,500원 + ② 2009. 3. 5.부터 2018. 12. 13.까지 488,338,878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 180,937,622원(= 대여금 776,000,000원 - 변제금 595,062,378원)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장차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증여한 것이라고 평가되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5.부터 2008. 12. 17.까지 C이 망인에게 지급한 106,723,500원의 경우 C이 부친을 위해 대가 없이 지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106,723,500원을 송금할 당시 그 금원의 성격을 2009. 3. 5.부터 2018. 12. 13.까지 C이 망인에게 송금한 488,338,878원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401,900,000원이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은 64,000,000원이므로 C의 법정상속분액은 94,334,113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01,900,000원 + C 특별수익액 180,937,622원 - 근저당채무액 64,000,000원) × 법정상속분 비율 2/11, 원 미만 버림)이다. 위 법정상속분액 94,334,113원에서 C의 특별수익 180,937,622원을 공제하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결과로 C이 무자력이 되었거나 무자력이 더욱 심화되었더라도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5억 8,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C의

상속지분만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제16호증)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을 제4, 5호증)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공시가격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제16호증) 외에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401,900,000원을 상속개시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수

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별지